

수자원현안위원회 운영규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한국수자원학회 수자원현안위원회(이하 현안위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현안위는 수자원 관련 기술적 및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안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, 토론회,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슈페이퍼를 작성하여, 현안 문제에 해결을 위한 우리 학회 차원에서의 연구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.

제3조(구성·운영) ①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여,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
② 위원회 위원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되, 한국수자원학회 이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회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위원장 업무를 보좌하게 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.

④ 위원장은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.

③ 개최 정족수는위원의 과반수로 하고, 의사(議事)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2/3 이상으로 한다.

제5조(이슈페이퍼) ① 이슈페이퍼 1편당 3인의 담당위원을 선임하며, 필요시 5인 이내의 객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 이슈페이퍼 1편당 3인 이내의 감수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.

③ 이슈페이퍼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출판할 수 있다.

④ 이슈페이퍼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이슈페이퍼 출판 시 학회에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개정) ① 본 운영규칙의 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안할 수 있으며,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3.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

② 위원은 ①항의 찬반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의 일부 개정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의 일부 개정은 2025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의 일부 개정은 202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